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현의원)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

적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만 지급 가능하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장애아동수당과는 수급권자의 연령만 다를 뿐, ‘저소득층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이라는 동일한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¹⁾의 경우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수급권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만으로는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지만, 장애아동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장애아동의 소급 지급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2조(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장애 아동부터 적용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